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0,627,166	9,318,815
일반회계	283,247,722	8,497,432
특별회계	27,379,444	821,383
기타특별회계	27,379,444	821,3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23,988	69,720
수질개선특별회계	15, 134, 347	454,0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9,760	18,593
의료급여특별회계	199,205	5,97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933,870	88,016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96,031	11,881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1,807,162	54,21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500	97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749,581	112,487
기반시설특별회계	183,000	5,490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29,822천원으로 한다.
- 제 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